

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

민법 제38조 및 「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하고,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처분의 제목 :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
2. 법인의 명칭 : 사단법인 항공우주정책연구원
3. 대 표 자 : 박경중
4. 주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-34, 1001호(안양 2차 SKV1센터)
5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: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
 - 최근(2023년~현재) 활동실적 없음
6. 법적근거
 - 민법 제38조(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)
 -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(설립허가의 취소)
7. 기타사항
 -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
 -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8. 담당자 :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배용건, ☎044-201-4785